

#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+ 방역강화

(12.1. ~12.14.)

English

GO



질병관리청



## 코로나19



3

코로나19 현황	사회적 거리두기	지원정책	코로나19 알림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확진자 이동경로</li> <li>확진자 현황</li> <li>주요집단사례</li> <li>확진자 추세</li> <li>부산시 상황보고</li> <li>일자별 현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회적 거리두기</li> <li>단계별 기준 및 방역수칙</li> <li>마스크 착용 의무화</li> <li>마스크 사용 캠페인</li> <li>예방행동수칙</li> <li>자가격리자 행동수칙</li> <li>가족/동거인 행동수칙</li> <li>코로나19 신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종합안내</li> <li>기업지원시책</li> <li>정부지원</li> <li>인터넷 방역단</li> <li>클린존 (방역안심시설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지사항</li> <li>코로나19 Q&amp;A</li> <li>마스크 의무화 Q&amp;A</li> <li>선별진료소</li> <li>부산 국민안심병원</li> <li>부산 호흡기전담클리닉</li> <li>코로나19 심리지원</li> <li>홍보(서식) 다운로드</li> </ul>

12월 10일 (Thu) 13시 30분 발표



지역	중구	서구	동구	영도구	부산진구
금일	1	-	3	-	3
누적	9	39	43	10	167

  

동래구	남구	북구	해운대구	사하구	금정구
4	1	2	2	2	-
103	60	110	128	60	46

  

강서구	연제구	수영구	사상구	기장군	기타
-	2	-	1	4	-
31	54	41	122	25	66

13시 30분 온라인 브리핑합니다.



대시민 호소문 전문('20.11.30.)



코로나19 전국 현황 자세히 보기



## 사회적 거리두기

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(2020.11.30.)



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(2020.11.30.)



###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+ 방역강화 (12.1. ~ 12.14.)



구분	시설 특성별 방역수칙	
중점관리시설 (9종)	(공통) 핵심방역수칙 의무화	▲ 마스크 착용 ▲ 출입자 명단 관리 ▲ 환기·소독 ▲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▲ 한 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'원스트라이크아웃제' 실시
	유흥시설 5종(클럽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)	▲ 집합금지
	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▲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▲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▲ 노래·음식 제공 금지
	노래연습장	■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▲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■ 음식 섭취 금지 ▲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 ■ <b>초·중·고등학생 출입금지(강화)</b>
	실내 스탠딩 공연장	▲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▲ 좌석 배치하여 운영(스탠딩 금지), 좌석 간 1m 거리두기

구분	시설 특성별 방역수칙	
	<p>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, 50㎡ 이상) * 12월 4일 0시부터 50㎡ 이하 소규모 음식점 2단계 추가 적용</p>	<p>▲ (식당 전체) 21시 부터 익일 05시까지포장·배달만 허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(다만,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)</li> <li>■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, 분식점, 패스트푸드(음식을 조리·판매하는 경우에 한함)</li> <li>■ (50㎡이상 추가 의무사항)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</li> </ul> <p>▲ (카페 전체) 영업시간 전체 포장·배달만 허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프랜차이즈형 카페) 프랜차이즈형 커피·음료전문점,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,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/빙수전문점 *가맹점 및 직영점 포함</li> <li>■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</li> <li>■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·일반음식점 중 커피·음료·디저트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</li> </ul> <p>* 분식점, 패스트푸드, 편의점 제외</p> <p>▲ (뷔페 추가 수칙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</li> <li>■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</li> <li>■ 결혼식장 내 뷔페 이용인원은 개별 결혼식 참석인원(100명 미만)으로 제한</li> </ul>
일반관리시설 (14종)	(공통) 핵심방역수칙 의무화	▲ 마스크 착용 ▲ 출입자 명단 관리 ▲ 환기·소독 ▲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
	실내체육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li> <li>■ 음식 섭취 금지</li> <li>■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</li> <li>■ 격렬한 GX류 시설*에 대하여 집합금지(강화) * 줄바, 태보, 스피닝, 에어로빅, 스텝, 킥복싱 등</li> </ul>
	결혼식장 / 장례식장	▲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	목욕장업	<p>▲ 음식 섭취 금지</p> <p>▲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</p> <p>▲ 사우나·한증막 시설(발한실) 운영 금지(강화)</p>
	영화관 / 공연장	<p>▲ 음식 섭취 금지</p> <p>▲ 좌석 한 칸 띄우기</p>
	PC방	<p>▲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</p> <p>▲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</p> <p>▲ 초·중·고등학생 출입금지(강화)</p>
	오락실·멀티방 등	<p>▲ 음식 섭취 금지</p> <p>▲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</p>
	학원(독서실 제외)·교습소·직업훈련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음식 섭취 금지</li> <li>■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.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</li> <li>- 2.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,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li> </ul> </li> <li>■ 관악기·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(강화) * 성악, 국악, 실용음악, 노래교실 등 학원·교습소·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, 다만 '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</li> </ul>
	독서실·스터디카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</li> <li>■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</li> <li>■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,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li> </ul>

구분	시설 특성별 방역수칙	
	놀이공원·워터파크	▲ 수용가능인원의 1/3으로 인원 제한
	아·미용업	▲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
	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 이상)	▲ 마스크 착용 ▲ 환기·소독
편의점·포장마차	▲ 12월 9일 0시부터 21시 이후 취식금지(포장·배달만 허용, 취식장소와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)	
국공립시설	▲ 경륜·경마·경정·카지노 운영 중단 ▲ 수용 가능 인원의 30%로 제한	
사회복지시설	▲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, 가능한 경우 비대면서비스 병행 ▲ 전체 어린이집 휴원 (12.3. ~ 별도 해제 시까지, 긴급 보육 이용 가능)	
마스크 착용 의무화	▲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, 실외라도 집회·시위장,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■ (실내)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, 가정 내·개별공간(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)은 제외	
모임·행사	▲ 100인 이상의 모임·행사 금지*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 ▲ 사적인 모든 모임·약속 자제,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(강화)	
스포츠 관람	▲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10%로 인원 제한	
교통시설 이용	▲ 마스크 착용 의무화 ▲ 버스, 기차 등 교통수단(차량)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(국제항공편 제외)	
등교	▲ 밀집도 1/3 원칙(고등학교는 2/3)	
종교활동	▲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% 이내 인원 참여 ▲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·식사 금지	
직장근무	▲ 기관별·부서별 적정비율(예: 전 인원의 1/3) 재택근무 등 실시,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*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 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 ▲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·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*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	
기타활동	▲ 헬스장, 사우나, 카페, 독서실 등 아파트·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(커뮤니티센터 등) 운영 중단(강화) ▲ 호텔·파티룸·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·연시 행사·파티 등 금지(강화)	
행정명령	▲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,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(공고2020-339, 소상공인지원담당관) : 9. 4.~별도 해제시 까지 ▲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변경 고시(고시 제2020-440호, 재난대응과) : 2020.11.12 ▲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(고시 제2020-479호, 재난대응과) : 2020.11.30 ▲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일부 변경 고시(고시 제2020-487호, 재난대응과) : 2020.12.3 ▲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(추가) 고시(고시 제2020-494호, 재난대응과) : 2020.12.8 ▲ 방문판매업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(고시 제2020-480호,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) : 2020.11.30	
위반시	시설 관리·운영자에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	



[코로나 뭐든 알리줌 6편] 부산 BMW 믿어도 되나??



[코로나 뭐든 알리줌 5편] 힘내세요 만덕씨



[코로나 뭐든 알리줌 4편] 역학조사관의 오해와 진실! 부산시 역학조사반은 어떤 일을 할까?



[코로나 뭐든 알리줌 3편] 뭐? 이거벗으면 과태료 부과?! 마스크 의무화의 모든 것



[코로나 뭐든 알리줌 2편] 동선 숨기고 자가격리 거부? 구상권에 관한 모든 것



[코로나 뭐든 알리줌 1편] 열나고 기침도 난다! 나도 혹시 독감? 코로나?



